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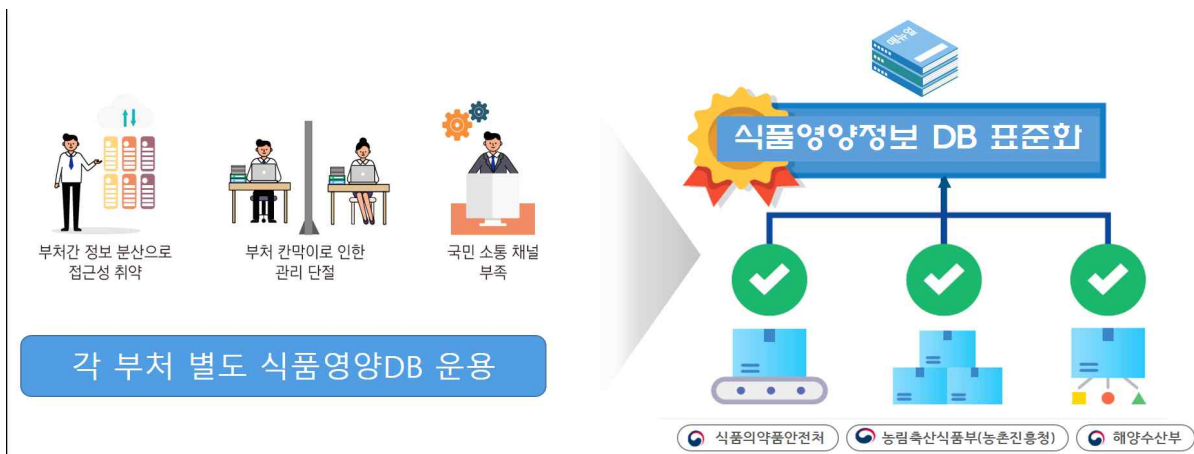
		<h1>보도자료</h1> <p>2021. 6. 8.(화) 배포</p>	
보도일	<p>2021. 6. 9.(수) 회의시작 시(14:00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·방송·통신 6. 9.(수) 회의시작 시(14:00)부터 보도 가능</p>		
담 당	교육부	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 사무관 김동로 (☎044-203-6543)	
	농림축산식품부	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과장 이용직 사무관 이귀리 (☎044-201-2272)	
	식약처	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과장 오영진 사무관 김수현 (☎043-719-2262)	
	해양수산부 (국립수산과학원)	식품위생가공과 과장 손광태 사무관 박영희 (☎051-720-2662)	

대국민 식품영양정보 원스톱 서비스 구축 및 활용 지원

6월 9일(수), 교육부·농림축산식품부·식품의약품안전처·해양수산부 업무협약 체결

- 교육부(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),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), 식품의약품 안전처(처장 김강립), 해양수산부(장관 문성혁)는 6월 9일(수) 오후 2시 세종시티호텔(충북 오송 소재)에서 ‘식품영양정보 데이터베이스(DB)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’을 체결한다.
- 이번 협약은 정부 관계 부처마다 흩어져 있는 식품영양정보를 표준화해 효율적으로 정보를 수집·생산하고, 해당 정보는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학교 등 공공분야는 물론 민간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.
- 주요 협력 분야는 ▲식품영양정보 표준화와 품질관리를 위한 표준작업절차(SOP) 수립 ▲매년 통합 공개하는 식품품목과 영양 정보 확대 ▲식품영양정보 공공·민간 서비스 활용 지원 등이다.
- 첫째, 각 부처는 보유한 정보*를 표준화해 공공데이터포털(행안부) 등에서 통합 제공한다.

- 각 부처는 농·축·수산물과 가공식품에 체계화된 표준코드를 부여해 식품정보와 영양성분정보의 표기방법(단위, 명칭 등)을 통일시키고 중복된 식품영양정보를 삭제·보완 등 관리해 정보의 품질을 향상시킨다.
- 또한 다양한 종류의 식품과 영양정보가 자동 연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데이터베이스 개방을 위한 표준작업절차서(SOP)를 마련한다.
- * 식품의약품안전처(식품안전나라 식품영양성분 DB), 농림축산식품부(농촌진흥청)(농식품올바로 메뉴젠 DB), 해양수산부(국립수산물연구원)(수산물 통합정보시스템)
- 각 부처는 통합된 식품영양정보를 공공데이터포털에서 '오픈 응용 프로그램인터페이스(API)' 방식으로 제공해 국민과 기업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

- 둘째, 각 부처는 식품영양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매년 통합 공개하는 식품품목과 영양정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.
- 식약처는 가공식품의 영양정보 조사대상을 확대하고, 조리식품(외식)의 영양성분 분석항목을 확대(80개→108개 항목)해 더욱 다양한 영양정보를 제공한다.
- * 가공식품·외식 등 식품 DB(식품수): ('21) 48,486건 → ('22) 60,000건 → ('25) 100,000건
- 농식품부(농진청)는 변화하는 소비 경향을 반영해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영양성분 분석 정보를 확대하고 우리 국민이 건강식단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.
- * 농·축산물 등 식품 DB(식품수): ('21) 2,540건 → ('22) 3,000건 → ('25) 4,000건

- 해수부(국립수산물연구원)는 전통수산물식품의 영양정보 조사대상을 확대해 수산물식품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고, 표준수산물성분표에 수록되지 않은 영양성분을 대폭 확대(67개→130개 항목)해 더욱 다양한 영양정보를 제공한다.

* 수산물 등 식품DB(식품 수): ('21) 1,366건 → ('22) 1,728건 → ('25) 2,000건

- 교육부는 각 부처에서 제공하는 최신 식품 영양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각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'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(NEIS) 학교급식 시스템('23년 개통 예정)'에 연계해 지원한다.



- 셋째, 식품영양정보를 활용하는 공공·민간분야 지원을 강화한다.

- 표준화된 영양정보는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서 식단 개발과 영양 관리에 활용할 수 있으며, 학부모와 학생에게도 실시간으로 영양·안전정보를 제공해 건강관리에 활용한다.

- 또한 전국 어린이급식센터에 영양학적으로 균형잡힌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기 위한 '스마트 어린이 급식관리시스템*' 구축에도 활용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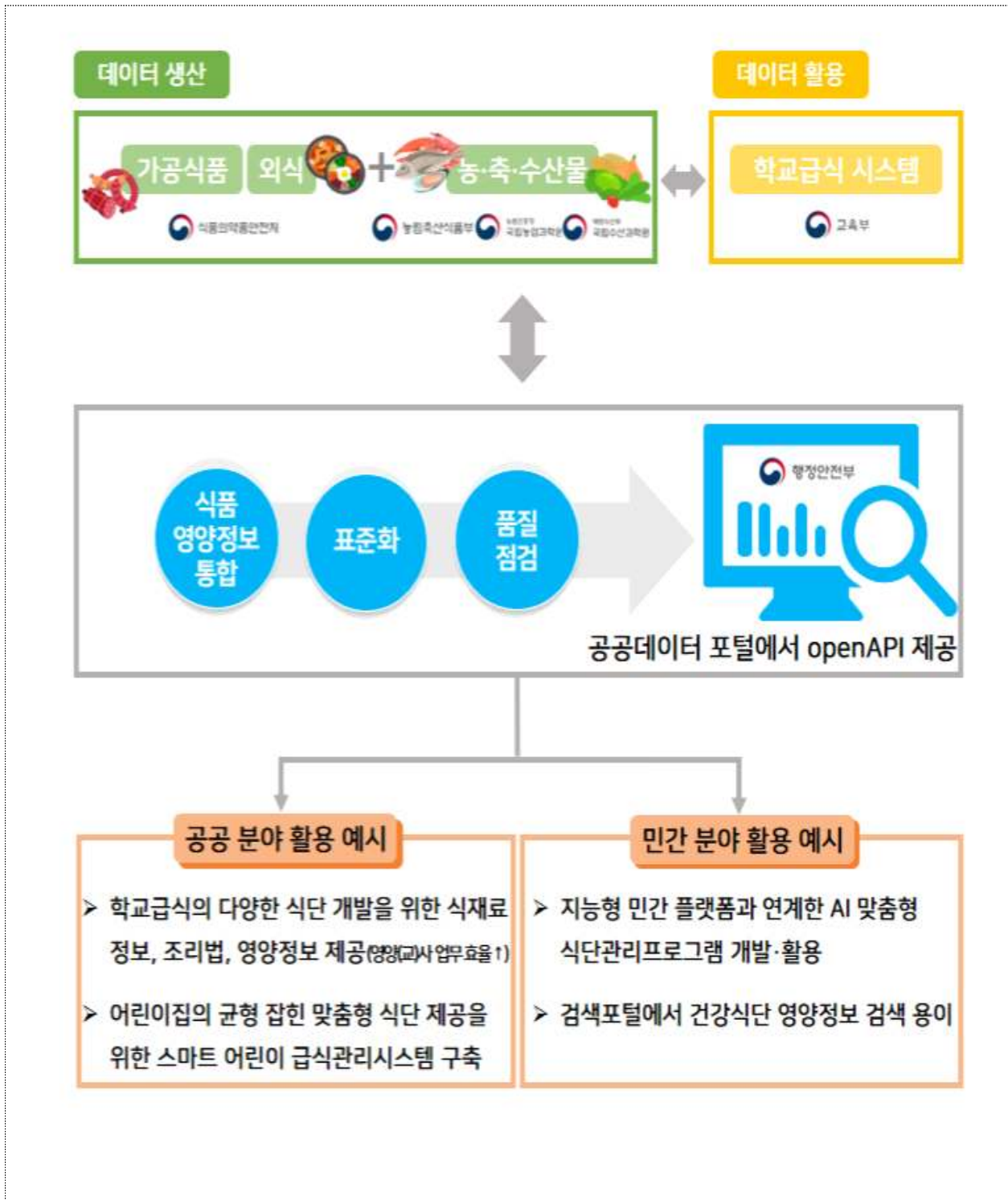
* 성장기를 고려한 연령별·대상별 맞춤형 식단, 저염식·제철식단, 식재료 수급이 어려운 경우 대체식단을 인공지능(AI)이 추천해 어린이에게 질 좋은 급식 제공

- 통합형 식품영양정보는 지능형 플랫폼을 개발·운영하는 기업 등에게 혁신적인 신(新)사업 발굴의 기회를 제공하고, 소비자들에게는 식품영양정보를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.



- 이번 협약식에 참석한 교육부 전진석 국장, 식약처 우영택 국장, 농식품부 권재한 국장, 국립수산물과학원 차형기 부장은 “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식품영양·안전분야의 공공데이터 활용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각 부처가 힘을 합쳤다.”라면서
- “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식품영양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앞으로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개인의 건강관리와 식생활 영양·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.”라고 밝혔습니다.

- 【참고】 1. 식품영양정보 DB 구축 및 활용 모식도
2. 업무협약식 개요



□ 개 요

- 일시 : 2021.6.9.(수) 14:00
- 장소 : 세종시티 오송호텔 2층 루비홀
- 주요 참석자
 - (식약처) 식품소비안전국장,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
 - (교육부) 학생지원국장, 학생건강정책과장
 - (농식품부(농진청)) 유통소비정책관,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장
 - (해수부(국립수산과학원)) 자원환경식품부장, 식품위생가공과장

□ 상세일정(안)

시 간		내 용	장 소	비 고
14:00~14:45	45'	○ 업무협약식 - 개회 및 참석자 소개(10') - 각 부처 국(부)장 인사말씀(20') - 협약내용 소개 및 서명(10') ※ 협약서 교환 - 기념촬영(5')	2층 루비홀	사회 (식약처)

‘식품영양정보 DB 구축 및 활용’을 위한 업무협약서

식품의약품안전처·교육부·농림축산식품부(농촌진흥청)·해양수산부(국립수산과학원)(이하 “협약기관”이라 한다)는 ‘식품영양정보 DB 구축 및 활용’을 위하여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것을 협의하고,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(이하 “본 협약”)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협약기관이 ‘식품영양정보 DB 구축 및 활용’ 분야 협업정원 제도의 정착과 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의 범위) ① 협약기관이 추진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식품영양정보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위한 표준작업절차(SOP) 수립
 2. 식품영양성분 데이터 수집·생산 효율화 및 확대
 3. 식품영양정보 공공·민간서비스 활용 지원
 4. 기타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업무 발굴 및 이행
-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세부사항은 협약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3조(실무협의회 등) 본 협약서에 규정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상호 협력을 위하여 실무협의회 및 민관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제4조(인력파견 및 운영) ① 협약기관은 ‘식품영양정보 DB 구축 및 활용’을 위한 협업업무에 적합한 인력을 상호 파견한다.

- ② 파견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부처 직제 시행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른다.
- ③ 파견인력에 대해서는 파견목적 외에 다른 업무를 분장하지 아니한다.

제5조(협약기간 및 협약의 해지) ① 본 협약은 협약기관의 협약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- ② 본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협업정원 기한 종료일까지 유효하며, 협업정원 기한이 연장될 경우 자동으로 연장된다.
- ③ 본 협약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협약기관이 합의하여 종료할 수 있다.

제6조(비밀유지) 본 협약서에 의해 상호 협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

한 정보에 대하여는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된다.

제7조(기타) ①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협약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.

② 본 양해각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양해각서의 조문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협약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8조(개정) 본 협약의 내용은 협약기관이 협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.

위와 같이 협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4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 기관에서 1부씩 보관한다.

2021년 6월 9일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식품소비안전국장

우 영 택



교육부

학생지원국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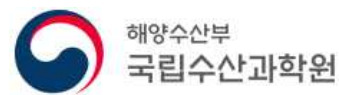
전 진 석



농림축산식품부

유통소비정책관

권 재 한



해양수산부
국립수산물안전관리원

자원환경식품부장

차 형 기